

#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서울시를 위해 함께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4조 마을 세무사 경력 기준은 ‘3년 이상’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규 세무사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인력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 제4조의 마을세무사 경력 기준을 ‘1년 이상’으로 일부 개정하여 신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 인력재원 가용성을 높여 적극적인 상담서비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상 자

격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.

- 서울특별시 마을 세무사 경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세무사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  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천만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